바른사회 바른사회 특별세미나

자유의 의미를 찾아서

일시: 2022.6.16(목) 오후2시

장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

주최: 바른사회시민회의

본 세미나는 바른사회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순 서

■ 사 회

- 이 웅 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 발 제

- 박 인 환 (변호사,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황 영 남 (안양예고 교장, 전 동국대 겸임교수)
- 이 인 철 (변호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 이 지 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토 론

- 박 인 환 (변호사,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황 영 남 (안양예고 교장, 전 동국대 겸임교수)
- 이 인 철 (변호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 이 지 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목 차

■ 발 제

자유(自由)의 법적, 정치적 의미 9
- 박 인 환 (변호사,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교육권(학습권)은 교육 선택의 자유 17
- 황 영 남 (안양예고 교장)

미래를 위한 언론의 자유 23
- 이 인 철 (변호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대북정책: 별을 보며 걷기 29
- 이 지 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특별 세미나
2nd Seminar on Liberty

발 제

■ 박 인 환 변호사, 바른사회 공동대표
■ 황 영 남 안양예고 교장
■ 이 인 철 변호사, 전 방문진 이사
■ 이 지 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유(自由)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 자유의 법적, 정치적 의미 -

박 인 환
변호사,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1. 자유(自由)의 존재론적 의미

0 인류 역사는 '자유를 향한 길고 험난한 여정' : 자유주의 혁명
- 자유는 인간 존재의 근본 문제(운명론, 자유의지론, 실존주의적 결단론)
- '나의 삶은 내가' :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개인의 결단과 노력)

0 Hegel 법철학 '자유로서의 법'
- '현존재가 도대체 자유 의지의 현존재로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법'
- 법의 본체는 의지(意志), 의지의 본질은 자유(自由)

0 국가(헌법과 법)의 존재 이유
- 국가는 개인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특히 재산권)의 보호 의무
-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자유와 권력의 조화]
- 자유와 권리의 제도화 : 근대 자연법론, 사회계약론, 계몽주의
- 최소한의 법과 규제 : 법의 양산(量産)[법률만능주의, 입법독재]
  * 20대 국회 약 23,000건 의원입법 발의(선진국 연간 100여 건)

1) 헌법 개념의 변천

0 근대 입헌주의 헌법
  :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을 위한 국가권력의 제한, 형식적 평등, 재산권의 절대성
0 현대 복지주의 헌법
  : 나아가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실질적 평등, 재산권의 상대성(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0 최근 실질적 법치주의와 사회정의 실현, 권력행사의 통제와 조정, 사회적 시장경제, 행정국가적 경향, 국제평화주의, 환경권, 건강권 등이 논의

2) 자연법(自然法)과 실정법

0 실정법의 지도원리로서 자연법의 우위
0 자연법은 민족·사회·시대를 초월해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

0 사회계약설, 저항권 사상
0 개인적 자유의 불가침, 소유권의 절대성, 사적 자치의 원칙

3) liberty와 freedom

0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Partrick Henry)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0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Thomas Jefferson)
The tree of liberty must be refreshed from time to time with the blood of patriots and tyrants.
0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0 독일 헌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Freiheitlich-demokratische Grundordnung

0 'liberal' 개념의 변화 : 젊은 세대의 진보적 가치 내포(진보자유주의자)

2.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제1항)

1) '민주공화국'의 의미

0 1948년 건국헌법(제헌헌법) : 민주공화국의 탄생
0 자유와 인권의 선언
0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결합 : 자유민주 공화국

2)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0 정치적 자유(대의제, 국민주권 원리)
0 경제적 자유(사적 재산권 존중, 자본주의 시장경제)

0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結社)의 자유
0 인민(민중)민주주의와 인민공화국의 배격
0 전체주의(totalitarianism)나 집단주의(collectivism) 배격

3) 자연법 사상과 천부인권(天賦人權)

0 법의 근원을 인간의 이성과 일치하는 사회적 근본 질서에서 찾음
0 천부인권은 인간이 생래적으로 가진, 타인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불가침, 불가양(不可讓)의 기본적 인권

0 자기 보존 및 방위권, 자유권, 평등권

0 자유의 권리화, 인권화(자유, 자유권의 자연권성)
- 자유주의(liberalism), 개인주의, 합리주의에 기초한 근대 자연법사상
- 1776년 미국 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 자유권은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 방어권적 성격

0 자유주의, 개인주의적 법률제도의 구성요소
- 개인의 자유 보장 : 자연권, 천부적 권리, 생래적 권리, 인간의 이성
- 사적 소유권(재산권) 불가침의 원칙
- 계약의 존중 : 법률상태의 창조 기능(pacta sunt servanda)
- 과실책임의 원칙

0 독일 기본법(헌법) 제1조
- 인간의 존엄 불가침,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
- 불가침, 불가양(不可讓)의 인권은 세계 모든 공동체의 평화와 정의의 기초
-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갖는 권리로서 입법, 행정, 사법을 구속

4)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와 야경국가(Night-watchman state)

0 19세기 자본주의 초기단계에서 경제적 자유주의 옹호
0 국가의 임무를 국방과 외교, 치안 유지 등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으로 한정[자유주의 국가관]

0 최소주의 국가(minimalist state), 소극적 국가(negative state)
0 20세기에 들어 민간의 자주적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지 등의 문제

5) 자유는 역사적으로 국가 권력과 대립

0 자유권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주관적, 개인적 공권(公權)
0 자유권의 대사인(對私人)적 효력(제3자적 효력) : 기업의 인권경영

0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 : 국가의 개입
-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참전(루즈벨트 대통령)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외부의 위협이나 전쟁, 재난으로부터 보호

0 빈곤(결핍)으로부터의 자유 : 복지 등 사회권
- 사회권 보장이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의 대립 구도
- 평등보다 자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
- 한편, 실질적 자유는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회권 보장을 전제

6) 자유에 대한 규제(제한) 가능성 : 자유의 상대성(헌법 제37조)

0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0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0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3. 자유와 평등의 상호 관계

1) 평등의 원칙

0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 평등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헌재 판례)
0 선택의 자유와 선택을 위한 기회균등 제공

0 자유의 가치가 인권의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평등으로 전환
  *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집회의 불허처분 : 집회의 자유, 성차별 금지
0 자유를 가장한 평등(적극적 자유, 실질적 자유)
0 평등의 자유주의적 완화(상대적 평등, 실질적 평등)
0 평등(차별금지)과 기회균등 : 법 앞의 평등, 합리적 차별
0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성평등(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2) 평등과 형평(衡平)의 문제

0 평등(equality) : 무조건 같게 대우
0 형평(equity)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공평, 공정)
0 불합리한 차별(discrimination) 금지와 차이(difference)의 인정에 따른 합리적 차별 가능성

3) 법의 이념(정신) : 형평과 정의(Justice)

0 Ulpianus
  정의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게 하는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의지'
  ius suum cuique tribuens(각자에게 자신의 몫을 주는)

0 정의(법)의 속성을 개념화
  각 사람에게 각자의 정당한 몫을 일시적이 아니라 항시적, 영속적으로 보장해 줄 때 정의와 법이 보장

0 John Rawls
  정의란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

0 법과 정의
- 법의 여신 Dike(그리스) (Justitia 로마) * Ius : 법, 권리, 몫
- 신임 법무장관 취임사(법무부의 역할) Ministry of Justice

- supreme court justice

4) 자유 이념과 평등 이념의 상호 적대적 갈등

0 자유와 평등은 서로 공존하기 어려운 관계
0 평등권의 보장과 경제적 자유 침해 : 재산권, 경영의 자유, 계약의 자유
0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는 '노예의 길'(토크빌, 하이에크)

5) 자유와 평등의 조화 모색 : 실질적 평등론과 사회권(생존권)의 등장

0 역사적으로 평등의 원리는 자유의 원리와 갈등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발전의 고도화에 따라 '형식적인 평등'에서 복지국가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실질적 평등' 추구

0 평등 원리는 절대적 평등에서 상대적 평등으로 전환 : 불합리한 차별금지

*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님(헌재 판례)

0 현대 복지국가의 원리

4. 자유주의의 변용과 보완

1) 자유주의와 개인주의(Individualism)

0 개인주의 : 국가나 사회에 대하여 개인을 우선하고 중시
0 개인의 존재와 가치를 중시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1840년 토크빌)
0 국가주의, 전체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에 대립
0 프로테스탄티즘과 자연법 사상에 기초한 사회계약설
0 자본주의적 사유재산 제도 : 개인의 소유권과 경제 활동의 자유
0 국가의 통제와 간섭 배제와 억압에 대한 저항(자유주의, 민주주의 바탕)
0 작은 정부 지향
0 무정부주의도 극단적 개인주의 원리에 바탕
0 이기주의 극복

2) 국가주의, 전체주의, 집단주의

0 one for all, all for one
0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0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
제19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국가 소유권의 대상은 무제한)

3)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0 신자유주의 : 국가의 시장개입 비판, 시장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 중시
0 1970년대 케인스 이론과 수정자본주의 실패를 지적(경제적 자유방임주의)
0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 도모)
0 '준칙에 의한' 소극적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
0 '복지' 病에 대한 경계 : 공공복지 확대, 정부재정 팽창, 근로의욕 감퇴
0 자유무역과 국제 분업에 의한 시장개방(세계화, 자유화 물결)

4) 보수주의와 신보수주의(네오콘, neo-conservatism)

0 신보수주의 : 보수주의의 새로운 부활
0 레이건 등의 극단적 보수주의보다는 다소 온건하게 출발(1970년대 미국)
0 자유우선주의(libertarianism)
0 미국 제일주의와 기독교 정신의 부흥 주창
0 평등화의 거부
0 거대 정부의 비능률로 개인과 재산 등 사적 영역의 정부 간섭 최대한 배제
0 그러나 개인과 재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도덕적 가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권력행사 요구

5)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 : 행복한 결과, 효용성

0 공리주의 : 가치 판단의 기준은 공리성(utility)
0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효용성과 결과에 따라 결정
0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경제적 자유주의를 뒷받침)
0 19세기 초 영국에서 곡물조례의 폐지와 자유무역을 주장한 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이데올로기로 출현
0 한편,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공리의 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의 간섭과 분배를 위한 사회적 입법도 정당화(복지국가)
0 개인적 공리와 사회적 공리
0 공리(utility)가 공익(public interest)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5. 결론 : 대안적 모색[自由의 새로운 의미 탐색]

1) 문정권의 전체주의, 국가주의, 사회주의적 평등주의

0 나라다운 나라 :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0 실현되지 못하고 실현 불가능한 구호(전체주의, 국가주의적 경향)
0 2015. 4. 발표 중국 공산당의 주장 표절(기관지 인민일보 게재)

2) J.S.Mill의 자유론(On Liberty, 1859년) : 이상적 공리주의

"온 인류가 같은 견해이고 한 명만 반대 의견을 가졌다 해서 인류가 그 한 명을 침묵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가졌다 해서 인류를 침묵시키는 게 옳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다."

0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강제력이 대중의 공공 여론에 반대해서 행사될 때보다 그것에 편승해서 행사될 때 더욱 유해하다고 지적
0 언론과 사상의 자유에 근본적인 가치 주장(절대적 불가침성)
0 개인의 행위가 타인의 이익에 연관되는 한, 그 항구적 이익(공리)을 위하여 개인의 자발성이 외부의 통제에 구속되는 것이 정당화
0 밀은 정부의 강제와 통제는 허용될 수 없다는 면에서 자유주의자
0 한편, 인류 전체의 공리를 위하여 공리를 저해하는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 공리주의자

3) 공동체 자유주의[박세일]

0 공동체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
0 자유주의를 기본(개인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창의 존중)
0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개인행복과 국가발전의 원리
0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의 가치
 * 공동체주의는 전체주의나 집단주의, 국가주의와 구분
0 사회구성원의 자발성 : 성찰과 배려, 자율과 책임 요구
0 상호 토론과 교육, 소통과 설득의 중요성

4)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0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조화

0 공화주의(republicanism)

- 정치적으로는 세습 군주에 의한 전제정체를 비판하고 선출제 채택(공화제)
- 사적 이익보다 공공(公共)의 이익을 우선하는 공민(시민)이 정치의 주체
- 국가(공화국, res publica)는 그러한 공민적 덕(civic virtue)에 기반

0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이념 모색

-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주의를 바탕

- 지나치게 이기적 개인주의 극복 : 자유와 자유방임, 방종의 구분
- 개인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
- 자유를 침탈하는 反기업, 親노조 정서
- 고령화 시대 복지 수요의 증대 : 정치적, 경제적 포퓰리즘
- 평등을 두려워하지 말라 :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
- 인간다운 삶의 보장 : 사회권(생존권), 현대 복지국가 원리

교육권(학습권)은 교육 선택의 자유
- 일반고를 교과집중고로 전환하여 학교를 선택하게 하자. -

황 영 남
안양예고 교장

1

교육에서의 자유는 교육받을 권리 혹은 교육에 대한 권리(rights to education)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교육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교육받을 권리를 학습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역시 제26조 제1항에서 "모든 사람은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다(Everyone has the right to education)."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국민들의 교육권 즉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하여 국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교육성과를 보장하며, 교육여건과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 국가의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의 사회적·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도 있다. 다음 세대의 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문화를 계승하고,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중시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공공의식의 함양으로 배려와 관용, 더불어 사는 공존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은 국가가 독점해서 국가만이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공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교육의 형태, 교육하는 방법, 교육받는 대상, 운영하는 주체 등을 차별하지 않고 지원해야 한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교육이 다른 교육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일률적인 학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학습 능력과 특기 적성, 진로 희망, 학습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스마트 교육환경이 구축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는 교육의 형태, 과정, 내용, 방법, 시기 등에서의 국민(개인)의 선택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 연령만을 기준으로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수준과 속도로 동시에 반드시 학습해야 한다고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폭력적인 행사이고 결국에는 개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사회의 주인공들인 학생의 학습권은 정치적, 경제적 혹은 그 어떤 차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특히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별이 이뤄져서는 안 되고, 배

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학습할 능력이 있는 학생에게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스템을 갖추고 지원해야 한다. 누구나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고, 학습자로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교육을 다양화 하는 일이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 최고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글로벌 교육 시장 개방과 대안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스마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공교육에서 충족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위해 국제학교, 대안학교, 홈스쿨링, 차터스쿨, 바우처제도 등을 적극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차츰 늘어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과 학습복지, 다문화 교육, 특수교육도 활성화 하여 국민 개개인이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설계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교육이 과연 이런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며 국가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는 학습자의 교육 선택의 자유가 극히 제한적이고, 교육과정과 수준은 획일적이며, 수월성과 경쟁보다는 평준화를 추구하고, 교육에서의 자율과 다양성의 가치가 무시되며 소홀히 되고 있는 점은 큰 문제이다.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인재를 길러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유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월성 교육에 대한 편견으로 등한시 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무엇보다도 사는 곳은 달라도 배우는 것은 같아야 한다는 평준화 교육 논리에 개인별 능력과 적성에 따른 학습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개개인의 존재 능력과 미래 생활을 위한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다.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교육이 백년대계는커녕 교육과정과 대입제도는 평균 2.5년에 한 번씩 바뀌고 있고, 선거의 전리품으로 전락한 교육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공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 개혁의 문제이지만, 미래의 문제이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미래와 일자리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시대 공교육의 문제를 나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대표적인 공교육 정책인 고교평준화 정책을 전환하여 일반고를 살리는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한다”로 표현되는 평준화된 일반고의 붕괴는 갈수록 심화되고, 사교육비의 증가는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아직도 고교평준화는 성역화되어 있다. 그 동안 일반고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안 정책들을 실행했지만 고교평준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들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일반고의 교실붕괴 원인을 다양하고 복합적인 데서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학생들에게 선택하지 않은 교

육과정을 강제하고, 잘 가르치기 위한 경쟁이 사라진 학교 교육을 방치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사라진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이 초래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고교학점제도 앞선 실패의 경로를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학교마다 다른 교육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무리하게 추진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음은 시범학교 운영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 학교마다 교사수급 문제로 선택과목수 제한은 물론 수요 변화로 인한 선택과목 개설의 불안정성, 학교간 지역간 교육여건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 확대, 고교 평가와 대입제도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 내신과 대입을 위한 사교육 수요 확대 등 많은 문제들을 새롭게 야기하거나 심화시킬 수가 있다.

아울러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내로 해야 교실에서 학습이 살아난다는 주장도 교육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학급당 학생수가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는 어떤 증거도 실증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학급당 20명 내외의 학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특별히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거나 학습능력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없음은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내 유지 주장은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 기대되는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높고, 과연 교육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안하는 방안은 고교평준화를 벗어나 일반고를 교과집중고로 전환하여 학교 선택, 교육과정 선택, 교과 선택의 자유를 학습자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개인의 교육권(학습권)을 보장하고, 진로와 희망에 따른 학습동기를 높이고, 학교간 잘 가르치기 위한 경쟁을 촉진하여 공교육의 책무와 신뢰를 높임으로써 교육력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공교육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일반고 교과집중고 전환 방안

□ 추진목표

1. 일반고의 특정 교과 집중화된 교과집중 교육으로 공교육 만족도 제고
2. 학생의 진로·희망에 따라 교과 집중화가 이뤄진 고교 선택권 보장
3. 고교학점제와 결합하여 교육의 효과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높임
4. 특목고, 자사고 등과 교육적 경쟁을 할 수 있는 일반고 실현 가능
5. 점진적 학생수 감소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여 일반고 위기 감소

□ 세부정책

1. 일반고의 교과집중고 전환으로 학생의 진로와 희망에 따른 고교 선택 가능
   - o 일반고 교육과정의 40% 이상을 특정분야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3년간 교과 174단위 중 70단위 이상 편성)
   - o 수학·과학, 인문·사회, 외국어, 체육, 예술(미술,음악), 연극·무용, 환경·생태, AI·데이터 등 다양한 교과집중고 가능
   - o 교과집중고에 모인 특정 교과군의 교사들이 다양한 관련 심화과정 개설 가능
   - o 교과집중고의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실험·실기실 등 교육환경의 효율적 구축 가능

o 교과집중고의 규모 및 학급수는 사전조사된 학생 희망에 따른 운영으로 심각한 학생수 감소 추세에도 탄력적 대응 가능

2.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교과집중고 운영[1)]
   o 지역사회의 특성과 학교, 학부모·학생의 희망에 따른 다양한 교과집중고 지정
   o 중학생때부터 사전 희망조사와 진로컨설팅 병행으로 수요중심 교과집중고 운영
   o 교과집중고에 대한 교육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교원인사의 합리성 확보
   o 교과집중고의 교육과정 운영의 체계성과 교육활동의 전문성 확보 가능

3. 교과집중고 전환으로 교원의 전문성 제고, 공교육의 책무성과 신뢰도 회복
   o 교과집중고를 통해 실질적인 학습자의 학교선택권, 교육과정선택권 보장
   o 교과집중고에 맞는 교육시설 구축 및 교사 배치를 통해 내실있는 교과 선택권 확보
   o 교과집중고에서는 관련 교과의 다양한 교육활동 및 심화과정 운영 가능
   o 주입식 결과중심 교육에서 참여식 과정중심 교육으로 실질적 전환 가능
   o 교원의 교과전문성 심화 및 관련 융합과목 지도역량 향상으로 교육경쟁력 확보
   o 학생 선택에 따른 맞춤형 교육서비스로 공교육의 책무성과 신뢰도 회복

□ 기대효과
1. 획일적 제한적 교육과정을 강요당하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희망과 적성에 따른 교과집중고 선택 진학은 새로운 교육환경 제공과 자기주도적 학습동기를 부여함
2. 사교육 수요가 많은 분야를 공교육에서 집중이수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이 가능하고 학부모들의 공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3. 감소하는 학생수를 대비하여 일반고는 교과집중고를 통해 선택받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공교육의 교육력 회복을 유도함
4. 일반고의 교과집중고 전환으로 교육투자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높일 수 있고, 교원들의 교과 전문성과 교과지도 역량도 심화시킬 수 있음

인류의 역사는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어 온 시간들이고, 여기에 더불어 발전해 온 민주주의는 참으로 소중한 가치이다. 학생들에게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말한 교육권 즉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공교육의 책무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학생들의 자유민주 의식을 함양하는 토대가 되리라 믿는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공교육을 개혁해야 한다.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서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 오늘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야 하고, 교육을 통해 기회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만이 빈부의

1) 예를 들면, A지역 교육지원청 관내 30개 고교가 있을 경우 중학생들의 희망을 사전 조사하여, 수학·과학집중고 8, 인문·사회집중고 5, 외국어집중고 2, 체육집중고 3, 음악집중고 2, 미술집중고 2, 연극·무용집중고 2, 환경·생태집중고 2, AI·데이터집중고 4 등의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 학생 희망에 따라 다양한 교과집중고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격차를 뛰어넘어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수단임을 믿을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교육은 발전적으로 변해야 하고 개혁해야 한다.

1. 언론의 자유

- ❖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 자유민주정과 결합된 제도적 자유로서의 언론의 자유

  cf. 표현의 자유
- ❖ 언론 자유의 내용 : 여론 형성의 자유, 권력 남용 견제 장치

  cf. 언론/미디어에서의 자유

2. 지난 5년간의 언론 자유 상황

- 2017년 KBS, MBC 사장 해임과 정권방송화
- 가짜뉴스 규제 법안 논란
- 2018년 4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 10월 가짜뉴스 규제 정부 문건 논란
- 2019년 유튜브 가짜뉴스 논란과 통신 심의 제재
- 2020년 코로나 방역과 집회 시위 규제
- 12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518역사왜곡 처벌법 입법 논란
- 2021년 언론중재법 입법 시도 논란

3. 미디어화와 사회 변화

- 네트워크 사회
  : 연결된 개인주의
  (networked individualism)
- 미디어화 현상 (mediatization)
- 필터링된 정보와 선택적 노출
  (Filter Bub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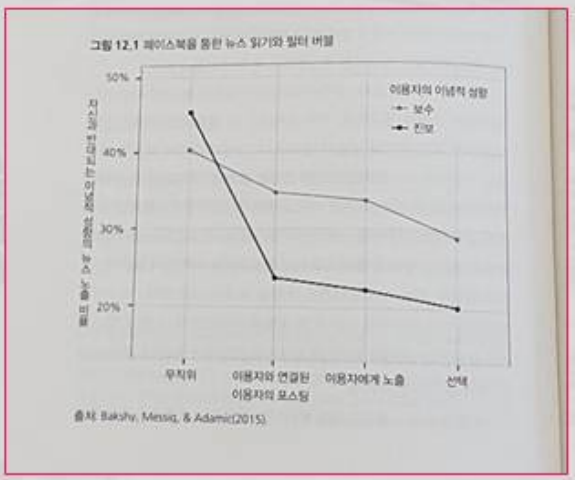

4. 저널리즘의 변화

- 저널리즘 가치 : 진실 원칙 / 공정성, 다양성, 투명성
- 블로그 저널리즘 : 대안 언론
- 탐사 보도 저널리즘 (Investigative Journalism)
- 옹호 저널리즘 (Advocacy Journalism)
- 문제 해결 저널리즘 (Solutions Journalism)
- 팩트 체크와 게이트 키핑의 문제

5. 정보 무질서 현상 (information disoder)

- 음모론과 가짜뉴스의 범람

[그림1] 정보 무질서

6. 미디어에서의 갈등

- ❖ 언론의 사회적 소통기구로서의 역할 한계
- ❖ 에코챔버(Echo Chamber)와 정치적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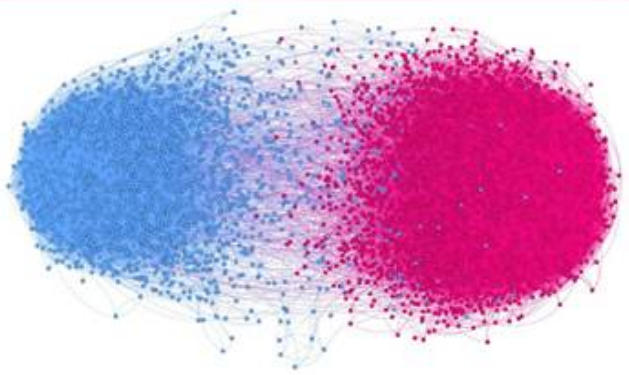

Fig. 1 Example of a polarized and segregated network on Twitter. The network visualizes retweets of political hashtags from the 2010 US midterm elections. The nodes represent Twitter users and there is a directed edge from node *i* to node *j* if user *j* retweeted user *i*. Colors represent political preference: red for conservatives and blue for progressives [20]. For illustration purposes, only the nodes in the $k = 3$ core

7. 언론의 자유의 미래

- ❖ 제도로서의 언론의 자유
- ❖ 정치 병행(political parallelism) 언론 문화 개선
- ❖ 레거시 미디어(지상파 공영방송) 개혁
- ❖ 미디어 전문직주의와 미디어 리터러시
- ❖ 언론/미디어의 재구성 : 콘텐츠, 생산자, 수용자, 관심의 시장(Marketplace of Attention)
- ❖ 민주정과 열린사회 : 언론/표현의 자유

감사합니다.

대북 정책: 별을 보며 걷기

이 지 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대북정책의 몇 가지 층위

1) 지향 : 평화 공존(분단 관리), 평화 통일(통일 지향)
2) 원칙 : 유지와 개선에 있어서, 시장경제, 자유민주, 보편적 인권준수
3) 정책 : 지도를 이용할 것과 길을 만들어 낼 것(경로의존성, 유연성)
국정 기조에 따른 정책 제시와 정책 개발을 통한 국정 선도

2. 정책

1) 대북 이니셔티브 : 직접적인 제안과 국제 환경 조성 경로
2) 대남 대응 : Tit for Tat(보상과 보복의 엄밀한 구분 : 대남관 학습 유도)
무시의 선택(국면 주도권 확보)
3) 국제 사회 환경 조성 :
중국 : 한반도 정세 변화와 중국 내부 통합 전략의 조화
러시아 : 러시아 극동 개발, TSR-TKR 등 경제적 공동 이익
미국 : 한미동맹, 공동 보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일본 :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사건
(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 事件)”
조일수교
조총련계 경제인
국제사회 : 대한민국 통일비전 (1.의 지향) 홍보
*북의 무력 행사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 매뉴얼 공지

3. 남북대화 및 교섭시 유의 사항

1) 제안자로서의 고민 : 북한의 무시 전략(전략적 공포)
   반응자로서의 애로 : 북한의 치킨 게임식 태도(전술적 경험)
2) 당사자와 당국의 구분
   인민과 당의 구분
   테크노크라트와 백두혈통의 구분
3) 개방공간과 대화공간
4) 글로벌 스탠다드와 북한 금칙의 틈새
5) 국가와 당, 백두혈통 체제의 비대칭 해체

<MEMO>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8, 용산전자오피스텔 913호
Tel : 02-741-7660~2
http://www.cubs.or.kr